



5 교통사고 상담과 교통재해 공제

5-3 손해배상과 산정방식

(1) 손해배상

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된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크게 나누어 다음의 4 가지가 있습니다.

| |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치료관계비 | • 휴업손해보상 |
| • 위자료 | • 사망이나 후유증에 따른 보상(일실회익 · 위자료) |

(2) 손해배상의 산정방식

손해배상의 산정방식에는 자배책보험, 임의보험, 변호사회의 산출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
| | |
|-------------------|--|
| 자배책보험의 경우 | 치료기간 중의 치료비 등의 보상은 상한이 120 만엔입니다. 그 이외에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후유증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 자배책보험은 피해자측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, 기본적으로 거부되는 일은 없지만, 대부분이 치료비에 충당되어 휴업보상이나 위자료가 조금밖에 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 |
| 임의보험 |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임의보험에 따라 상한이 있습니다. |
| 변호사회의 산출방법 | 일본변호사회가 민사소송 때 산정하고 있는 방법. 또한, 교통사고의 책임이 가해자 쪽에 많은가, 피해자 쪽에 많은가를 판단하는 「과실비율」과 같은 사고방식이 있으며, 그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. |